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경남 거제 집에서 잠자던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하여 숨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교제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 즉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를 규율하고 선도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기반한 ‘가정구성원’간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가 스토킹 행위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일상성에 비해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통제에

1) 이 글은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김효정·김정해·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집 1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기반하여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소위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맥락에서 검토·분석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강압적 통제로서 교제폭력의 특성

### 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

교제폭력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양상 중 하나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속성이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다. 친밀한 파트너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위계적인 젠더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확인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가해자는 다양한 폭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파괴하고 찬탈함으로써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두어 두려는 전략을 펼친다.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교제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는 동등하거나 평등하지 않으며, 여타 젠더기반폭력에서 나타나는 징후와 특성을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교제폭력의 가해자는 여성혐오적 가치관과 태도를 보이고,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며, 성적 관계를 맷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적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견 명확해 보이는 이러한 교제폭력의 징후는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시에는 폭력으로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파트너의 행동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거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조금 과하게 집착하는 것 정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리적, 신체적, 직접적인 폭력 피해만을 ‘진정한’ 폭력 피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 나. 고립과 통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중요한 징후이자 결과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펼치는 주요한 전략이다. 친밀한 파트너십의 모색 또는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앞서 설명한 징후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애정 및 친밀성과 교묘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립과 통제로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전략은 서서히, 지속적인 방식으로 강화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계기를 통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트너 관계에서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이별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존재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통제와 권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손쉽게 분노로 전환된다.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불평등한 권리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가해자의 전략이 좌절될 때, 가해자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영원히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설정한 위계적 관계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가해자들은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협박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둬 두려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통제 범위는 피해자 본인을 넘어서 친구와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자해 또는 자살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주변인을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나아가거나, 스토킹 행위 또는 불법촬영 및 유포·유포 협박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가둬 두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전략으로 인해 피해자는 점차 가해자에게 종속적·위계적 방식으로 의지하게 되고, 가해자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 다. 종속적·위계적 파트너십의 설정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권리관계는 일상의 삶과 행동 속에서 상시로 확인된다. 가해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욕설을 하

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성역할 규범은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향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성역할 규범의 설정 등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이러한 성역할 규범을 받아들일수록 남성적인 역할은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양상으로, 여성적인 역할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자의 어울리는 역할이 존재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행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남성성의 발휘는 ‘폭력’이 아닌 ‘남성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 라. 친밀함에 가려진 폭력의 위험성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구조변동 속에서 비혼, 이혼, 재혼 등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제폭력 이슈 역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연령대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전통적이고 협소한 인식을 넘어서, 중장년층과 고령의 연령대를 포함하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다. 비혼 인구의 증가, 중년·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중장년 연령대에서 새로운 친밀 관계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3년 최초로 개소한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의 경우, 개소 초기에는 20~30대의 젊은 연령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막상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는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및 고령의 연령대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폭력적인 남성성의 발휘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폭력 피해로 인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고령층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마. 강제된 동의에 기반한 관계의 지속

교제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무엇에 취약한지 그 약점을 알고 파고들며, 협박, 동정심, 애정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들에게서 이러한 강제된 동의는 주로 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교제폭력의 가해자가 학대적인 행위나 성적인 영상 등의 촬영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대적 행위와 성적인 촬영물들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온라인에서 시작된 경우 정보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하

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특히 스토킹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이 일상화되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가해자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양상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바. 안전이별과 피해자 비난의 모순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적인 가해자에게 헤어짐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근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연인 관계에서의 헤어짐 이후 보복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해자를 자극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렵고, 안전이별을 도모하기 위해 마땅히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 즉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대해 인지하고 헤어짐을 결심한 이후에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무사히 이별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이별을 유예하면서 헤어짐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와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피해자의 노력은 모순 적이기도 주변인의 관점에서는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왜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는가’,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는 가정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오래된 질

문이 다시금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되돌아가고, 그 속에서 폭력의 책임과 원인을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비난의 논리는 더욱 강화된다.

### 3. 향후 과제

교제관계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서의 강압적 통제가 구축되는 과정은 직접적이거나, 단일하거나, 가시적인 양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때로는 폭발적이고 직접적인 양상으로, 때로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제폭력의 특성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강압적 통제가 살인 등 극단적이거나 폭발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의 우선 순위는 신체적, 물리적 피해의 정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교제관계의 정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와의 결혼 여부나 데이트 폭력의 낭만성을 삭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폭력 용어의 사용 등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친밀성의 구조 변동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를 구성하는 보편적이거나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결혼의 지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및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구성된 현재의 가족 또는 가정구성원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검토와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실천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30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이 현대사회의 가족과 친밀성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개선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와 그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통제관계의 강압적인 지속과 피해자의 공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안전이별의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는 피해자의 노력을 마치 폭력적인 가해자의 곁에 ‘자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그 속에서 ‘왜 가해자를 떠나지 않는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되살아나 피해자 비난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고, 이는 폭력과 협박, 공포에 근거한 불평등한 권리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의 주요 메커니즘이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기반하여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 피해 없이도 피해자에 대한 조종과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해악과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교제폭력 대응의 전 과정과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나이가 강압적 통제로서 교제폭력의 근본에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권력 관계에 기반한 억압과 통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를 평등한 방식으로 전환하

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대방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김효정(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과 쟁점: 현장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40권 1호.
-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집 1호.